





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전국 목욕장업 특별방역조치 시행 안내

## 1. 관련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8266(2021.3.13.)
-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8267(2021.3.13.)
- 다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3.20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2021.3.20.)를 통해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 종사자 전수 PCR검사 실시, 이용자 발열체크, 이용시간 1시간 제한(권고)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 '특별방역조치'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3. 이에 따라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에 기 적용되고 있던 목욕장업 방역수칙이 일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,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○ 적용기간: 2021. 3. 22.(월) 0시 ~ 별도 조치 통보시 까지

○ 대상지역: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(14개 시·도)

- 대상시설: 목욕장업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붙임 참조
- 붙임: 전국 목욕장업 특별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4.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,

-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,
  -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관련 단체등에 안내하며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(행정안전부)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

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##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

수신자 본부각과장, 중앙행정기관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전국 지자체(17개 시도)



주무관	홍명기	행정사무관	박은경	생활방역팀장	조우경	사회전략반장	손영래
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 본부 총괄책임 관	이기일	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 본부 부분부장	강도태	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 부 부분부장	2021. 3. 22 권덕철		

협조자 건강정책과장 고희우

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(2021. 3. 22.) 접수 건강정책과-2236 (2021. 3. 22.)  
중앙사고수습본부-9268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7층 / <http://ncov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1725 팩스번호 044-202-0000 / [mk7069@korea.kr](mailto:mk7069@korea.kr) / 비공개(5)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

# 목욕장업 특별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8266(2021.3.13.), 8267(2021.3.13.)에 따른 일반 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목욕장업에 대하여는 본 조치로 적용함

## ① 적용 지역

- 전국(수도권/수도권 외 지역 구분)

## ② 적용 대상

- (대상) 「공중위생관리법」이 적용되는 목욕장업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## ③ 적용 기간

- 2021년 3월 22일(월) 0시 ~ 별도 조치 통보 전까지

## ④ 법적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**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**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**제83조(과태료)**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**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**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**5 추진내용 및 절차**

- ① (중대본) 일반관리시설 중 목욕장업 방역지침 준수 조치  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- ↓
- ②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 
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- ↓
- 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- ↓
- 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,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\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
\*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경고, 운영중단,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**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(참고1)**

## 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  
경고·시설 운영 중단·폐쇄명령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,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 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.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
-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
\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 
가능함을 안내
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,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

-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# 참고 1

## 목욕장업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### □ 수도권

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(세신사, 이발사, 매점운영자, 관리직원 등) *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 (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)</li> 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용자 전자출입명부(QR체크인)* 인증 의무화 *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가능</li> </ul> </li> <li>▶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* 게시 * 감기몸살,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(강력 권고)</li> <li>▶ '달 목욕(정기이용권)' 신규발급 금지</li> <li>▶ 이용시간 1시간 제한(강력 권고) 및 안내판 게시 * 이·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</li> <li>▶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* 평상 등 공용 물품 및 공용 용기 사용 금지</li> <li>▶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</li> <li>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(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)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금지</li> <li>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 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</li> <li>▶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신고면적 8㎡당 1명) *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게시</li> <li>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</li> <li>▶ 사우나·한증막·찜질시설 등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* 게시 및 안내 *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(최소1m)거리두기</li> <li>▶ 샤워시설, 옷장 한 칸 띄어 사용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</li> <li>▶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(QR체크인)* 인증 의무화 *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가능</li> <li>▶ 감기몸살,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(강력 권고)</li> <li>▶ 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(강력 권고) * 이·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</li> <li>▶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* 평상 등 공용물품 및 공용 용기 사용 금지</li> <li>▶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</li> <li>▶ 목욕실,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</li> <li>▶ 이용인원 제한 준수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</li> <li>▶ 사우나·한증막·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인원 제한 준수 *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(최소1m)거리두기</li> <li>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</li> <li>▶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에는 시설 이용 금지</li> </ul>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## □ 수도권 외 지역

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(세신사, 이발사, 매점운영자, 관리직원 등) *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 (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)</li> 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 - 이용자 전자출입명부(QR체크인)* 인증 의무화 *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가능</li> <li>▶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* 게시 *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(강력 권고)</li> <li>▶ '달 목욕(정기이용권)' 신규발급 금지</li> <li>▶ 이용시간 1시간 제한(강력 권고) 및 안내판 게시 * 이.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</li> <li>▶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* 평상 등 공용 물품 및 공용 용기 사용 금지</li> <li>▶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</li> <li>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 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</li> <li>▶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신고면적 4㎡당 1명) *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게시</li> <li>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(QR체크인)* 인증 의무화 *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가능</li> <li>▶ 감기몸살,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(강력 권고)</li> <li>▶ 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(강력 권고) * 이.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</li> <li>▶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* 평상 등 공용물품 및 공용 용기 사용 금지</li> <li>▶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li>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섭취 금지</li> <li>▶ 이용인원 제한 준수 (시설 허가신고면적 4㎡당 1명)</li> </ul>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
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

## 참고 2 | 질의응답

### 1.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불가능한 이용객에 대한 조치 사항

- 스마트 핸드폰으로 확인 가능한 전자출입명부(QR체크인) 작성이 어려운 목욕장 이용객에 대해서는
  - 일반폰으로 가능한 '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\*'을 통해 목욕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
  - \* QR코드에 익숙치 않는 노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하여 전화한통으로 편리하게 출입인증을 하는 출입관리방법으로, 각 기관·시설별 부여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ARS시스템에서 방문등록이 완료

### 2. 목욕장 종사자에 대한 PCR 전수 조사가 실제 가능한지

- 목욕장 종사자에 대한 PCR 전수 조사를 이미 시행한 지자체\*가 있으며, 향후 시행할 지자체는 예방접종, 확진자 발생 등 검사능력을 감안하여 보건소 등 관련기관과 일정협의 후 해당지역 한국목욕업 협회(지회) 협조 하에 지체없이 실시

### 3. 공용물품 사용 및 사적 대화금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

- 공용물품 중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평상, 공용 용기, 빗, 음료컵 등이며, 그 외 공용물품은 수시로 표면소독 하에 사용
- 사적 대화금지는 종사자의 방역준수사항 고지 등은 가능하며, 종사자 및 이용자 사이의 사적인 대화는 금지됨을 의미함

### 4. 목욕탕 1시간 이내 사용에 있어 강력권고 조치 범위는??

- 목욕탕의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염위험도가 높아져 가급적 1시간 이내로 권고하였으며, 이러한 권고문을 목욕탕 입구 등 여러 곳에 게시하여 목욕탕 등의 이용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